

2000年度第1會忠清北道追加更正豫算(案)

檢 討 報 告 書

(議 會 事 務 處)

2000. 5.

議會運營委員會
專 門 委 員

目 次

1. 2000年度第1會忠清北道追加更正歲出豫算(案) 規模
2. 議會事務處第1會追加更正歲出豫算(案) 規模
3. 檢 討 意 見

1. 2000年度 第1會 忠清北道追加更正歲出豫算(案)

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당초예산(A)		제1회추경(B)		증 감(B-A)	
	금 액	%	금 액	%	금 액	%
합 계	755,959,348	100	799,102,858	100	43,143,510	5.7
총 무 과	12,462,178	1.6	12,859,981	1.6	397,803	3.2
공 보 관 실	743,353	0.1	795,807	0.1	52,454	7.1
감 사 관 실	121,420	-	123,280	-	1,860	1.7
기 획 조 정 실	49,891,638	6.6	48,259,842	6.0	△1,631,796	△3.3
자 치 행 정 국	69,914,187	9.2	89,353,985	11.2	19,439,798	27.8
소 방 본 부	32,019,351	4.2	31,621,189	4.0	△398,162	△1.2
중 평 출 장 소	28,141,476	3.7	28,556,776	3.6	415,300	1.5
여 성 정 책 관 실	18,123,519	2.4	18,973,407	2.4	849,888	4.7
복 지 환 경 국	151,741,972	20.1	154,372,853	19.3	2,630,881	1.7
옥 친 전 문 대	900,000	0.1	900,000	0.1	0	-
공 무 원 교 육 원	2,613,366	0.4	2,762,356	0.3	148,990	5.7
보 건 환 경 연 구 원	2,180,672	0.3	2,180,672	0.3	0	-
경 제 통 상 국	45,299,097	6.0	42,513,655	5.3	△2,785,442	△6.1
농 정 국	114,967,872	15.2	132,559,304	16.6	17,591,432	15.3
농 업 기 술 원	12,808,227	1.7	14,093,356	1.8	1,285,129	10.0
문 화 진 흥 국	36,223,403	4.8	41,922,552	5.2	5,699,149	15.7
건 설 교 통 국	174,286,195	23.1	173,488,971	21.7	△797,224	△0.5
의 회 사 무 처	3,521,422	0.5	3,764,872	0.5	243,450	6.9

○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(안) 규모는 당초예산 7,559억 5,934만 8천원보다 5.7% 증가(431억 4,351만원)한 7,991억 285만 8천원임.

2. 議會事務處 第1會 追加更正 歲出豫算(案)

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당 초	제1회추경	증 감
항	세 항	세세항			
지방의회운영			3,521,422	3,764,872	243,450
	의회운영		2,589,542	2,670,992	81,450
		경상예산	2,385,032	2,385,032	0
		사업예산	203,510	284,960	81,450
	의정활동		931,880	1,093,880	162,000
		경상예산	931,880	1,093,880	162,000

- 2000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(안)은 당초예산액 35억 2,142만 2천원보다 6.9% 증가(2억 4,345만원)한 37억 6,487만 2천원 규모로
- 도 전체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(안) 7,991억 285만 8천원의 0.5%를 점하고 있음.

3. 檢討意見

의회사무처의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.9%인 2억 4,345만원이 증가한 37억 6,487만 2천원으로

주요 증가한 사항으로

의회운영의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0.0%증가(8,145만원)한 2억 8,496만원으로 본회의장 및 의장실 등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

의정활동의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.4% 증가(1억 6,200만원)으로 지방자치법(개정 '99. 8. 31) 및 동법시행령(개정 '99. 12. 31)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 없음